

2017년 3/4분기 노사협의회 협의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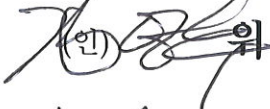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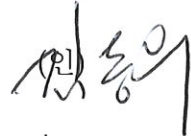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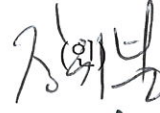


1. 일 시 : 2017. 9. 28.(목) 11:00
2. 장 소 : 공단 회의실
3. 참 석 : 총 10명(사측 5, 노측 5)
 - ▷ 사 측 : 이사장, 경영지원실장, 기획예산팀장, 총무인사팀장, 재무회계팀장
 - ▷ 노 측 : 위원장, 부위원장, 사무국장, 고문, 대의원
4. 개최결과

안 건	주 요 내 용
I. 부산시종합감사 처분 결과 관련	
① 특정업무수행비 지급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합 : 특정업무수행비 미지급은 근로조건 저하이므로 공단측에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• 공단 : 특정업무수행비 미지급 인력에 대해서 이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정
② 징계받은 자 호봉승급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단 :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미비된 규정 정비 • 조합 : 규정 미비의 문제이므로 규정개정이 타당함
③ 보상휴가제도 도입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단·조합 : 보상휴가제도 도입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고,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시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 합의
II. 감사원 감사 처분 결과 관련	
① 유급휴일 운영(창립기념일)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단 :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 • 조합 : 「상위법 우선의 원칙」에 따라 단체협약은 규정에 우선하므로, 공단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
② 퇴직금 산정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단 : 예산편성지침 및 유권해석에 의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자체평가금(100%)만 포함·산정 • 조합 : 평가금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퇴직금 저하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공단 의견 수용 불가
③ 공로연수자 활동비 지급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단 :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공로연수수당 및 해외연수 경비 미지급을 위한 내부지침 개정 필요 • 조합 :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므로 공단 의견 수용 불가

안 건	주 요 내 용
III. 성과연봉제 폐지 합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단·조합 : 정부 성과연봉제 폐기 결정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일반직4급 직원은 호봉제로 환원하되,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는 합의타결금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폐기 결정에 의해 반납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음

사 측 위 원

노 측 위 원

이 사 장	김 영 수		위 원 장	최 광 식	
경영지원실장	이 주 현		부위원장	윤 성 환	
기획예산팀장	주 욱 상		사무국장	김 동 우	
총무인사팀장	장 귀 봉		고 문	성 창 승	
재무회계팀장	방 준 호		대 의 원	강 동 천	